

배타적경제수역 결정의 한 방법론

#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한 상 복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장 · 이학박사

## 자연환경의 변화

지금 우리는 아열대기후로 변하는 초기 단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 근거로 겨울철 수온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연교차가 점점 작아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우리의 자연환경을 조사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는 이미 1441년 5월 28일 문종이 세자시절에 측우기를 발명한 이후 우량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임진왜란으로 잠시 중단된 적은 있으나 1770년에 재개되어 측우기에 의한 우량기록은 1907년 12월까지도 계속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양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늦어서 근대의 자연환경 조사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약간 뒤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연안 기상조사 : 1884년

1월(인천 원산)

△ 정규 기상관측 : 1904년

3월(부산 목포)

△ 등대 기상관측 : 1909년

1월(장기갑 거문도 절영도 부도 옹도 등)

△ 연안 해양조사 : 1915년

6월(부산 인천 목포 군산 포항 주문진 등)

△ 등대 해양조사 : 1916년

7월(죽변 장기갑 거문도 어청도 소청도 등)

△ 정선 해양관측 : 1917년

5월(영일만-울릉도)

이러한 자연환경 조사가 지속적으로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비록 시작은 약간 늦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하기에 비교적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함은 당연하다.

우리의 자연환경은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 초기 과정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변동기에 따른 불안정으로 인해 그 변화의 폭도 클 것으로 예측되지만 앞으로 온도의 연교차는 적어지고 대신 일교차가 커지며 겨울철 강수량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지속적인 조사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에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국가기본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

우리는 새로운 국제연합해양법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자유롭게 멀리 나가서 해양조사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남의 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한다.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도 1974년 4월부터 200

해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을 정도로 너무나 귀에 익은 것이며, 1982년 12월 10일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중요한 과제였고, 1994년 11월 16일 이 협약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뚜렷한 현실로 변했다.

이제 해양조사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는데도 자유롭던 시대는 지나간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1996년 2월 28일부터 이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12해리 영해 인정(수권 기권 암권에 배타적 주권 인정, 제3조)

(2)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인정(수권 암권에 주권적 권리 인정, 제57조)

(3) 200-350해리 대륙붕 인정(암권에 주권적 권리 인정, 제76조)

(4) 중첩되는 경우 중간선으로 합의 유도(제15조)

(5)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허용량 결정 의무(제61조)

(6)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음(제121조)

(7)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에서 연안국간 협력 의무(제123조)

(8)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제192조)

(9) 해양과학조사의 국제협력 증진 의무(제242조)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 연안국의 권한을 확대해 주고, 대신 생물자원의 보존과 해양환경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새로운 해양질서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제 해양질서의 변환기에 살고 있으면서 그 특유의 일시적인 혼돈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를 자주 듣는다.

자연환경도 변하고 사회적인 국제 해양질서도 변하고 있다. 국제적인 해양질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 어업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의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의 결정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인데, 각 연안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이 수역은 영해

다음으로 연안국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며 또 해양생물자원의 관리를 위한 각종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는 각 연안국이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지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연안국간 협력이 의무화된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에 속한다. 그러나 경계 설정에는 국제법을 기초로한 합의가 필요하다. 해양법협약 제121조는 도서제도(島嶼制度)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 뚜렷이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의 연안국들이 제정한 국내법에서는 단순히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수역을 설정하고, 중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한국 : 상대국과 합의(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하되, 합의가 없는 경우 중간선 외측에서의 권한 행사 포기(제5조)

△ 일본 : 중간선(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

△ 중국 : 상대국과 합의(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본은 상대국과 합의가 필요 없이 중간선을 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결정에 상대국과 합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우리의 경우 합의가 없으면 중간선 외측에서의 권한 행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국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여기서 국제연합 해양법협약 제121조의 적용은 각국의 복잡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주는 명쾌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기점을 공동으로 조사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상대국과 협의하는데는 외교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중간선으로 범위를 정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1999년 1월 22일 발효된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은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 결정을 위한 중간 과정이고, 중국과의 어업협정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중국이 공표한 기점들이 국제법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중간수역 또는 이와 비슷한 공동관리수역이 과연 필요한가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의가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배타적경제수역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해양경찰의 강화는 필연적 사항이다.

### 최외각 도서의 활용 방안

우리나라 영토의 가장 외각에 위치한 섬들의 중요성은 배타적경제수역 결정에서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동해에 있는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가 대표적인 예이다. 독도의 경우는 우리가 1953년부터 실질적으로 유인도화 해서 점유하고 있으나 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의해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에 속하므로 배타적경제수역 결정을 위한 기점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러면 유인도인 울릉도와 오끼시마의 중간선으로 쉽게 수역이 결정될 수 있고 독도의 영유권 논쟁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일본의 옛 문헌에도 예의 없이 이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과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중간선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을 결정하고 그 바탕에서 생물자원허용량을 결정해야 하며,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물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껏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았던 최외각 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 관리의 요지가 될 수 있도록 어항시설을 확장해야 하고, 등대시설은 항로표지업무와 함께 해양수산을 위한 종합관측 기지화 되도록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8개소의 유인등대가 있는데 앞으로 무인자동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최외각 도서에 있는 등대는 더욱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해서 해양수산의 종합적인 조사기지로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상주인원들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맑은 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직이나 연구직이나 또는 어떤 직종이든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공무원은 차별 없이 일정한 정년제도를 확립하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명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